##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48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신동욱・박준태・박정하

조은희 • 우재준 • 김소희

김도읍 • 박상웅 • 백종헌

안상훈 • 유상범 • 김은혜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희롱·성폭력, 폭행, 따돌림 등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보완·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스포츠 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육단체에게 재심의를 요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의3 신설 등).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 체육과 관련된 시간·공간·관계 속에서 선수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 요·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언어적·정서적· 신체적 폭력 행위
  - 나. 성희롱 · 성폭력 등 성적인 폭력 행위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침해 행위

제18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③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피신고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조치 절차, 제3항에 따른 상환청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9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제2항에 따른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등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체육단체에게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16제1항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1호의4부터 제11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의4.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
- 11의5.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
- 11의6.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대응활동과 관계있는 자에 대한 교육 훈련
- 11의7. 체육계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신고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
	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
	영 등 체육과 관련된 시간ㆍ
	공간・관계 속에서 선수 등
	체육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u>가. 상해, 폭행, 감금, 협박,</u>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
	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폭
	력 등 언어적 · 정서적 · 신
	체적 폭력 행위
	<u>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u>
	인 폭력 행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인권침해 행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생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①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② (생 략) <신 설>

-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 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③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에 따 른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스포츠윤리센 <u>터의 장이 부담하고 이</u>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피신고인에게 행 사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피해자에 대 한 조치 절차, 제3항에 따른 상 환청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제2항에 따른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③ (생략)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 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 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 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한다.

<신 설>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등 재심의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해당 체육단체에 게 재심의할 것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

---<u>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u> <u>한다)</u>-----

\_\_\_\_\_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

<신 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 저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11의3.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신 설>

<신 설>

12. (생략)

② ~ ④ (생 략)

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	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
<u>방법ㆍ내용과 제3항에 따른</u>	통
계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u>정한다.</u>	
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1. ~ 11의3. (현행과 같음)	
11의4. 체육계 인권침해에 관	한
실태조사	
	호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u>11</u> 의6.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
대응활동과 관계있는 자에	대
한 교육・훈련	
 11의7. 체육계 인권침해로 인	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